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김 호 식

#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개정이유

-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, 혁신도시 시즌2 추진,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,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<기구 조정>

- 신 설(안 제13조의2)
  - 환경산림국
- 명칭변경(안 제13조)
  - 바이오환경국 → 바이오산업국

## <분장사무 조정>

### ○ 이 관(안 제13조의2)

- 환경정책, 기후대기, 수질관리 업무 : 바이오환경국 → 환경산림국
-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 : 농정국 → 환경산림국

## 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, 혁신도시 시즌2 추진,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,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은 환경산림국을 신설하고 바이오환경국을 바이오산업국으로 명칭변경하며, 환경정책, 기후대기, 수질관리 업무를 바이오환경국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하며,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농정국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전하는 것임.

이는 도의 국단위를 1개 추가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전담부서를 국단위로 신설하고,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농정국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산림을

개발의 관점이 아닌 환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 부칙 제8항의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도록 한 것은, 운영위원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